|  |  |  |
| --- | --- | --- |
| **소형, 미형기업 부분 행정사업성**  **비용 징수면제에 관한 통지**  재종[2011] 104호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상무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중국무역촉진회, 국가토지자원부, 국가신문출판총서, 농업부, 국가임업국, 국가여행국, 국가종교사무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신상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발전개혁위원회:  소형·미형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소형·미형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소형·미형기업의 부분 행정사업성비용의 징수를 임시면제하기로 결정한다. 현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공업정보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중소기업 규모구분 표준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공신부연기업[2011] 300호)에 따라 인증한 소형과 미형기업에 대해 관리형, 등기형 및 증명서 유형 등 관련 행정사업성비용의 징수를 면제한다.  2. 상술한 징수면제의 행정사업성비용 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수취한 기업등록등기비용  (2) 세무부문이 수취한 세무 세금계산서 제작비용  (3) 해관부문이 수취한 해관감독관리 수속비  (4) 상무부문이 수취한 선적증명비용, 수공제품 증서비용, 방직품 원산지 증명비용  (5) 품질검사부문이 수취한 일반원산지 증명비용, 일반원산지 증명 제작비용과 조직기구대마증서 제작비용  (6) 무역촉진회가 수취한 화물원산지 증명서비용, ATA카르넷 비용  (7) 국토자원부문이 수취한 토지등기비용  (8) 신문출판부문이 수취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기비용  (9) 농업부문이 수취한 농기계 감리비용(监理费)(번호증명 제작비, 안전기술검사비, 운전면허 허가 시험비 등 포함), 신 가축약 심사비준비용,《수입가축약품허가증》심사비준비용과 이미 생산한 가축약 품종 등록등기비용  (10) 입업부문이 수취한 임업권리증명 제작비용  (11) 여행부문이 수취한 호텔등급 간판(성급(星级) 증서포함) 제작비, A급 여행 풍경구 간판(증서포함) 제작비, 공업/농업 여행시범지역 간판(증서포함) 제작비  (12) 중국 이슬람교협회가 수취한 이슬람교 식품 인증비  (1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그 재정, 가격주관부문이 관리권한에 따라 비준하여 설립한 관리류, 등기류 및 증명서 유형의 행정사업성비용  3. 상술한 행정사업성비용을 징수면제한 후, 동급 재정부문은 관련 부문의 경비예산을 일괄적으로 기획하여 배치하고, 직책을 이행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4. 국무원 유관부문은 본 시스템 내의 관련 비용 단위가 본 통지의 규정을 실행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소형·미형기업이 비용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등기자료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미형기업이 비용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 가격주관부문은 여러 종류의 신문매체를 통하여 사회에 소형·미형기업에 대해 징수를 면제하는 각 항목의 행정사업성비용을 공포하여, 소형·미형기업이 비용 우대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본 통지 행정사업성비용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 부문과 단위는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책임인원의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6. 본 통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며, 유효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1년 11월 14일 |  | **关于免征小型微型企业部分**  **行政事业性收费的通知**  财综[2011]104号    工业和信息化部、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国家税务总局、海关总署、商务部、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中国贸促会、国土资源部、国家新闻出版总署、农业部、国家林业局、国家旅游局、国家宗教事务局，各省、自治区、直辖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物价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发展改革委：    　　为切实减轻小型微型企业负担，促进小型微型企业健康发展，现决定对小型微型企业暂免征收部分行政事业性收费。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对依照工业和信息化部、国家统计局、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关于印发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的通知》（工信部联企业[2011]300号）认定的小型和微型企业，免征管理类、登记类和证照类等有关行政事业性收费。  　　二、上述免征的行政事业性收费项目包括：  　　（一）工商行政管理部门收取的企业注册登记费。  　　（二）税务部门收取的税务发票工本费。  　　（三）海关部门收取的海关监管手续费。  　　（四）商务部门收取的装船证费、手工制品证书费、纺织品原产地证明书费。  　　（五）质检部门收取的签发一般原产地证书费、一般原产地证工本费和组织机构代码证书工本费。  　　（六）贸促会收取的货物原产地证明书费、ATA单证册收费。  　　（七）国土资源部门收取的土地登记费。  　　（八）新闻出版部门收取的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费。  （九）农业部门收取的农机监理费  （含牌证工本费、安全技术检验费、驾驶许可考试费等）、新兽药审批费、《进口兽药许可证》审批费和已生产兽药品种注册登记费。  　　（十）林业部门收取的林权证工本费。  　　（十一）旅游部门收取的星级标牌（含星级证书）工本费、A级旅游景区标牌（含证书）工本费、工农业旅游示范点标牌（含证书）工本费。  　　（十二）中国伊斯兰教协会收取的清真食品认证费。  　　（十三）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及其财政、价格主管部门按照管理权限批准设立的管理类、登记类和证照类行政事业性收费。  　　三、免征上述行政事业性收费后，同级财政部门应统筹安排相关部门的经费预算，保证其正常履行职责。  　　四、国务院有关部门要督促本系统内相关收费单位认真落实本通知的规定，加强对小型微型企业享受收费优惠政策的登记备案管理，确保符合条件的小型微型企业享受收费优惠政策。  　　五、各省、自治区、直辖市财政、价格主管部门要通过多种新闻媒体，向社会公布对小型微型企业免征的各项行政事业性收费，使小型微型企业充分了解和享受收费优惠政策。同时，要加强监督检查，对不按规定落实本通知免征行政事业性收费政策的部门和单位，要按规定给予处罚，并追究责任人员的行政责任。  　　六、本通知自2012年1月1日起执行，有效期至2014年12月31日。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二○一一年十一月十四日 |